

제364회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1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6.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 157. 2019년도 예산안
 - 가. 교육부 소관
- 15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부 소관
- 159.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교육부 소관
- 16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61.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13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3
161.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14
16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4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규환 · 권석창 · 안상수 · 김용태 · 김무성 · 김종석 · 전희경 · 경대수 · 유의동 의원 발의) 15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병관 · 채이배 · 어기구 · 김혜영 · 제윤경 · 이재정 · 송옥주 · 이연주 · 오제세 · 이해찬 · 이철희 · 전혜숙 · 양승조 의원 발의) 15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강석호 · 이명수 · 정운천 · 홍문표 · 김성태 · 김현아 · 장제원 · 박성중 · 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5581) 15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장석춘 · 문진국 · 김선동 · 김성원 · 정진석 · 원유철 · 유기준 · 윤상직 · 김진태 · 여상규 의원 발의) 15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김승희 · 함진규 · 윤영석 · 나경원 · 한선교 · 인재근 · 심기준 · 이완영 · 강석진 의원 발의) 15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중 의원 대표발의)(홍문중 · 지상욱 · 권석창 · 임이자 · 이채익 · 김성원 · 박순자 · 이양수 · 김명연 · 문진국 의원 발의) 15
 9.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조훈현 · 이은재 · 나경원 · 한선교 · 김석기 · 홍문표 · 함진규 · 주호영 · 정진석 의원 발의) 15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이춘석 · 최인호 · 백혜련 · 이찬열 · 권철승 · 신경민 · 정재호 · 전혜숙 · 이학영 · 전현희 의원 발의) 15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 · 홍문표 · 김승희 · 이우현 · 서청원 · 정갑윤 · 박명재 · 원유철 · 조훈현 · 김석기 · 김재경 의원 발의) 15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민기 · 노웅래 · 이찬열 · 유은혜 · 전재수 · 박경미 · 김정우 · 심기준 · 윤영일 의원 발의) 15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민기 · 노웅래 · 이찬열 · 신창현 · 유은혜 · 전재수 · 추미애 · 박경미 · 심기준 · 윤영일 의원 발의) 15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민기 · 노웅래 · 이찬열 · 신창현 · 유은혜 · 전재수 · 추미애 · 김정우 · 심기준 · 윤영일 의원 발의) 15
 15.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관영 · 김광수 · 김삼화 · 손금주 · 이동섭 · 이용호 · 장정숙 · 홍의락 · 황주홍 의원 발의) 15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유은혜 · 신창현 · 안민석 · 김민기 · 김영호 · 전재수 · 추미애 · 노웅래 · 채이배 · 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62) 15
 1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이현승 · 이채익 · 정갑윤 · 박찬우 · 김성찬 · 윤영석 · 김승희 · 김한표 · 박완수 의원 발의) 15
 18. 사료의 수집 ·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이현승 · 이채익 · 정갑윤 · 박찬우 · 김성찬 · 윤영석 · 김승희 · 김한표 · 박완수 의원 발의) 15
 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안민석 · 노웅래 · 김민기 · 남인순 · 원혜영 · 김부겸 · 전재수 · 김성수 · 윤소하 · 정춘숙 · 박남춘 의원 발의) 15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송옥주 · 윤관석 · 소병훈 · 노웅래 · 신

창현 · 정성호 · 홍영표 · 김영호 · 정재호 · 어기구 의원 발의)	15
2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윤관석 · 소병훈 · 노웅래 · 신창현 · 정성호 · 홍영표 · 김영호 · 정재호 · 어기구 의원 발의)	15
23.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나경원 · 조경태 · 정유섭 · 이은권 · 이현승 · 이진복 · 金成泰 · 윤상현 · 권석창 의원 발의)	15
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 · 황주홍 · 이찬열 · 고용진 · 김삼화 · 채이배 · 최도자 · 유동수 · 박준영 · 이용호 · 민홍철 의원 발의)	16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전해숙 · 노웅래 · 윤영일 · 박찬대 · 정동영 · 박주현 · 최도자 · 천정배 · 유성엽 의원 발의)	16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유기준 · 신창현 · 박찬대 · 기동민 · 이해찬 · 김중로 · 유동수 · 민홍철 · 안규백 · 심기준 · 윤관석 · 김정우 · 정동영 · 소병훈 · 고용진 · 채이배 의원 발의)	16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김영호 · 신창현 · 정성호 · 윤관석 · 김정우 · 표창원 · 김성수 · 소병훈 · 노웅래 · 이해찬 · 채이배 의원 발의)	16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유기준 · 신창현 · 박찬대 · 기동민 · 이해찬 · 김중로 · 유동수 · 민홍철 · 안규백 · 심기준 · 윤관석 · 김정우 · 정동영 · 소병훈 · 고용진 · 채이배 의원 발의)	16
2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유은혜 · 박정 · 김해영 · 오영훈 · 신창현 · 이찬열 · 박찬대 · 윤후덕 · 조승래 · 정성호 · 전재수 · 김종희 · 안민석 의원 발의)	16
3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송희경 · 김종석 · 박맹우 · 백승주 · 최운열 · 홍의락 · 유민봉 · 김성식 · 김석기 · 윤종필 · 전희경 · 박찬우 · 이종구 의원 발의)	16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 · 김상훈 · 김명연 · 주광덕 · 김승희 · 송석준 · 김석기 · 박인숙 · 추경호 · 성일종 · 김순례 · 윤한홍 의원 발의)	16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문희상 · 윤후덕 · 인제근 · 소병훈 · 김종민 · 윤호중 · 이수혁 · 심재권 · 권철승 · 박정 · 홍영표 의원 발의)	16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김상훈 · 김명연 · 강석진 · 이종명 · 추경호 · 윤재옥 · 한선교 · 김석기 · 윤영석 · 박맹우 의원 발의)	16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 · 김정우 · 김종대 · 남인순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심기준 · 안호영 · 윤관석 · 전재수 · 정성호 · 한정에 의원 발의)	16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박정 · 윤소하 · 박찬대 · 고용진 · 조승래 · 이원욱 · 백혜련 · 임종성 · 민병두 · 신경민 · 김성수 · 윤관석 · 박영선 · 노웅래 · 김삼화 의원 발의)	16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성일종 · 최연혜 · 김규환 · 이채익 · 강길부 · 유의동 · 윤영석 · 민경욱 · 박맹우 의원 발의)	16
3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유은혜 · 김병욱 · 오영훈 · 조승래 · 김민기 · 노웅래 · 이종걸 · 서형수 · 최인호 의원 발의)	16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유은혜 · 김병욱 · 오영훈 · 조승래 · 김민기 · 노웅래 · 이종걸 · 서형수 · 최인호 의원 발의)	16
3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윤호중 · 백혜련 · 변재일 · 정춘숙 · 이철희 · 윤관석 · 권미혁 · 박경미 · 서형수 의원 발의)	16
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지상욱 · 이동섭 · 김삼화 · 이찬열 · 이언주 · 김중로 · 권은희 · 오세정 · 김수민 · 박주선 의원 발의)	16
4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장정숙 · 이개호 · 조승래 · 김영호 · 박찬대 · 김정우 · 이철희 · 오영훈 · 신창현 · 윤관석 · 이수혁 · 김종대 · 유	

- 동수 · 박정 · 송옥주 · 심기준 · 유은혜 · 고용진 · 남인순 · 민홍철 의원 발의) 16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 · 권은희 · 김관영 · 김동철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도자 · 하태경 의원 발의) 17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신보라 · 김승희 · 김석기 · 이장우 · 엄용수 · 이진복 · 김한표 · 홍일표 · 조훈현 의원 발의) 17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백혜련 · 박용진 · 채이배 · 정춘숙 · 이종걸 · 최운열 · 이용득 · 임중성 · 윤후덕 · 강훈식 의원 발의) 17
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이종배 · 강석진 · 이명수 · 박성중 · 조경태 · 함진규 · 홍문중 · 원유철 · 유재중 의원 발의) 17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송희경 · 김종석 · 박맹우 · 유민봉 · 윤상직 · 황영철 · 김영우 · 주호영 · 이종구 의원 발의) 17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김철민 · 안규백 · 진선미 · 강창일 · 유승희 · 유은혜 · 백혜련 · 송희경 · 안민석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47) 17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김철민 · 안규백 · 진선미 · 강창일 · 유승희 · 유은혜 · 설훈 · 송희경 · 안민석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51) 17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송희경 · 이양수 · 박인숙 · 정태옥 · 이명수 · 나경원 · 김승희 · 이종배 · 조훈현 의원 발의) 17
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송기현 · 유은혜 · 김병욱 · 강창일 · 유동수 · 오영훈 · 정성호 · 이수혁 · 김종민 · 심기준 · 심재권 의원 발의) 17
5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김부겸 · 유은혜 · 신창현 · 김병욱 · 전재수 · 정성호 · 고용진 · 조승래 · 노웅래 · 전해철 · 설훈 · 박주민 · 오영훈 의원 발의) 17
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한선교 · 함진규 · 김성원 · 홍문표 · 백승주 · 최연혜 · 조훈현 · 주광덕 · 정태옥 의원 발의) 17
5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유은혜 · 노웅래 · 안민석 · 정춘숙 · 이석현 · 김민기 · 전재수 · 조승래 · 김병욱 · 김상희 · 백혜련 · 윤관석 의원 발의) 17
5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7
5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7
5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7
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7
5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7
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7

-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7
- 6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8
- 6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8
- 6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18
- 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김승희 · 정동영 · 권석창 · 한선교 · 김세연 · 김성원 · 이명수 · 정진석 · 이종배 의원 발의) 18
- 6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현승 · 박덕흠 · 김재원 · 박명우 · 곽대훈 · 이양수 · 이완영 · 임이자 · 신상진 의원 발의) 18
-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김병욱 · 정춘숙 · 안호영 · 임종성 · 이원욱 · 표창원 · 윤관석 · 유은혜 · 김병기 · 김영호 · 김두관 의원 발의) 18
- 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김병기 · 문희상 · 김병욱 · 박정 · 김현권 · 안호영 · 최인호 · 임종성 · 김경협 · 백혜련 의원 발의) 18
-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박광은 · 김두관 · 김해영 · 권칠승 · 박정 · 전현희 · 이춘석 · 백혜련 · 윤관석 · 정재호 의원 발의) 18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원유철 · 윤재옥 · 곽대훈 · 이종배 · 김상훈 · 정태옥 · 김재원 · 주호영 · 정갑윤 의원 발의) 18
-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노웅래 · 이종배 · 윤종필 · 김성원 · 김명연 · 유성엽 · 이종구 · 김세연 · 정양식 의원 발의) 18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김경진 · 황주홍 · 김한표 · 김삼화 · 유의동 · 김중로 · 이찬열 · 최도자 · 이동섭 의원 발의) 18
- 7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김경진 · 황주홍 · 김삼화 · 유의동 · 김중로 · 김규환 · 이찬열 · 최도자 · 이동섭 의원 발의) 18
-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강창일 · 유동수 · 오영훈 · 정성호 · 이수혁 · 심재권 · 송기현 · 표창원 · 전재수 · 손혜원 의원 발의) 18
-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조배숙 · 소병훈 · 주승용 · 이용득 · 윤영일 · 김민기 · 최도자 · 박주민 · 박홍근 의원 발의) 18
- 7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김병욱 · 김민기 · 조승래 · 정춘숙 · 안규백 · 김성수 · 오영훈 · 노웅래 · 인재근 · 손혜원 의원 발의) ... 18
- 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김병욱 · 김민기 · 조승래 · 정춘숙 · 안규백 · 김성수 · 오영훈 · 노웅래 · 인재근 · 손혜원 · 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10) 18
-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오세정 · 전희경 · 한선교 · 김석기 · 이철규 · 염동열 · 나경원 · 이은재 · 이종배 · 송희경 · 김정훈 · 조경태 · 이종명 · 박완수 · 정성호 · 박주민 의원 발의) 18
-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이정미 · 신경민 · 손금주 · 김영호 · 박주민 · 유은혜 · 금태섭 · 오영훈 ·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30) 18
-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유기준 · 권석창 · 이명수 · 김성

원 · 윤재옥 · 김석기 · 정태옥 · 김현아 · 강석진 의원 발의)	18
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중대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노회찬 · 민홍철 · 김경진 · 강병원 · 김현권 의원 발의)	18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윤영일 · 진선미 · 이동섭 · 김경진 · 천정배 · 이개호 · 김광수 · 김중로 · 김중회 의원 발의)	19
8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한정애 · 강훈식 · 신창현 · 최도자 · 윤소하 · 추미애 · 양승조 · 금태섭 · 김영호 의원 발의)	19
83.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김병욱 · 백혜련 · 윤후덕 · 이찬열 · 강훈식 · 박주민 · 문희상 · 박정 · 고용진 · 김경협 · 유동수 의원 발의)	19
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유동수 · 문희상 · 전현희 · 송기현 · 이동섭 · 박덕흠 · 김병관 · 주승용 · 위성곤 · 김철민 · 박정 · 설훈 의원 발의)	19
85.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노웅래 · 신창현 · 오영훈 · 정성호 · 김영호 · 김경협 · 유은혜 · 소병훈 · 김민기 · 김병욱 의원 발의)	19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노웅래 · 신창현 · 오영훈 · 정성호 · 김영호 · 김경협 · 유은혜 · 소병훈 · 김민기 · 김병욱 의원 발의)	19
8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서형수 · 이해찬 · 강훈식 · 정춘숙 · 윤소하 · 권미혁 · 원혜영 · 금태섭 · 강병원 · 조승래 · 채이배 의원 발의)	19
8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추경호 · 김상훈 · 정태옥 · 김재원 · 주호영 · 정갑윤 · 곽대훈 · 윤재옥 · 신보라 의원 발의)	19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유승희 · 이찬열 · 강훈식 · 윤관석 · 안호영 · 강병원 · 임종성 · 김경협 · 윤후덕 의원 발의)	19
9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김철민 · 정동영 · 김광수 · 최경환(평) · 이찬열 · 김삼화 · 채이배 · 박주민 · 조배숙 의원 발의)	19
9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조배숙 · 주승용 · 윤영일 · 최도자 · 박홍근 · 유은혜 · 전재수 · 손혜원 · 설훈 의원 발의)	19
9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소병훈 · 이동섭 · 고용진 · 민홍철 · 박정 · 유동수 · 유승희 · 김중로 · 신창현 · 김영호 · 박주민 · 원혜영 · 남인순 · 안민석 의원 발의)	19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윤후덕 · 김상희 · 유동수 · 전현희 · 윤소하 · 기동민 · 정춘숙 · 오제세 · 신창현 · 금태섭 의원 발의)	19
9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금태섭 · 서영교 · 백혜련 · 정춘숙 · 이학영 · 윤영일 · 진선미 · 김상희 · 박병석 · 이재정 · 윤호중 의원 발의)	19
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조승래 · 유동수 · 김상희 · 표창원 · 노웅래 · 김경협 · 전재수 · 진선미 · 안민석 · 오영훈 · 고용진 · 김병욱 · 금태섭 ·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67)	19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동섭 · 신창현 · 정춘숙 · 송옥주 · 권미혁 · 진선미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68)	19
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동섭 · 신창현 · 정춘숙 · 송옥주 · 권미혁 · 진선미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69)	19
9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안규백 · 윤후덕 · 이동섭 · 신창현 · 정춘숙 · 송옥주 · 권미혁 · 진선미 · 윤관석 의원 발의)	19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 · 이찬열 · 이언주 · 김중로 · 최도자 · 김삼화 · 강훈식 · 설훈 · 황주홍 · 손혜원 의원 발의)	19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 · 이양수 · 경대수 · 김승희 · 권석창 · 송희경 · 광대훈 · 여상규 · 김성찬 · 김규환 의원 발의)	19
10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김중희 · 김경진 · 정인화 · 이동섭 · 김광수 · 장정숙 · 천정배 · 안상수 · 손금주 · 이찬열 의원 발의)	19
1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안민석 · 유동수 · 안규백 · 신창현 · 윤후덕 · 박정 · 윤관석 · 한정애 · 이재정 · 송석준 의원 발의)	20
10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전해숙 · 이동섭 · 김경진 · 손금주 · 윤관석 · 김광수 · 천정배 · 박주현 · 이용호 의원 발의)	20
1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윤영일 · 정진석 · 이명수 · 황영철 · 안상수 · 박덕흠 · 박성중 · 정갑윤 · 김명연 의원 발의)	20
10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정춘숙 · 송기현 · 권미혁 · 이찬열 · 박정 · 이수혁 · 박선숙 · 안호영 · 황주홍 의원 발의)	20
10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정병국 · 조배숙 · 유승민 · 박덕흠 · 윤종필 · 김세연 · 지상욱 · 하태경 · 이동섭 · 유동수 · 김삼화 의원 발의)	20
1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김병욱 · 노웅래 · 김민기 · 전재수 · 김병기 · 안민석 · 오영훈 · 유은혜 · 설훈 의원 발의)	20
1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광대훈 의원 대표발의)(광대훈 · 이채익 · 김정재 · 추경호 · 김규환 · 정유섭 · 유민봉 · 최연혜 · 정진석 · 이철규 의원 발의)	20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박주현 · 전해숙 · 황주홍 · 김광수 · 안호영 · 박선숙 · 김경진 · 설훈 · 유성엽 · 정동영 의원 발의)	20
1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이명수 · 이종배 · 박덕흠 · 김기선 · 정태욱 · 김성찬 · 김중로 · 이종명 · 신보라 의원 발의)	20
1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 · 강훈식 · 김성수 · 박정 · 송옥주 · 심재권 · 박주민 · 전해숙 · 유동수 · 이학영 의원 발의)	20
1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이재정 · 강훈식 · 윤후덕 · 남인순 · 신창현 · 박주민 · 송옥주 · 강병원 · 송기현 의원 발의)	20
1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권미혁 · 김병기 · 김철민 · 송옥주 · 심재권 · 안민석 · 윤후덕 · 이수혁 · 제윤경 의원 발의)	20
1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김현아 · 김경진 · 이동섭 · 신용현 · 김삼화 · 김승희 · 최도자 · 채이배 · 오신환 의원 발의)	20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안민석 · 이석현 · 김병욱 · 유은혜 · 인재근 · 조승래 · 이개호 · 노웅래 · 강창일 의원 발의)	20
1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안민석 · 이석현 · 김병욱 · 유은혜 · 인재근 · 조승래 · 이개호 · 노웅래 · 강창일 의원 발의)	20
11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안민석 · 이석현 · 김병욱 · 유은혜 · 인재근 · 조승래 · 이개호 · 노웅래 · 강창일 의원 발의)	20
1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 · 추경호 · 임이자 · 문진국 · 김기선 · 정갑윤 · 박성중 · 김석기 · 원유철 · 최연혜 의원 발의)	20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권칠승 · 이찬열 · 유성엽 · 김경진 · 천정배 · 조배숙 · 김중로 · 윤영일 · 임종성 의원 발의)	20
12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권칠승 · 이찬열 · 유성엽 · 김경진 · 천정배 · 조배숙 · 김중로 · 윤영일 · 임종성 의원 발의)	20
1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 · 강훈식 · 권미혁 · 김병기 · 김영호 · 문희상 · 안민석 · 유동수 · 이동섭 · 진선미 의원 발의)	20

1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박주선 · 김삼화 · 정성호 · 김광수 · 이
용호 · 이언주 · 신용현 · 오신환 · 김수민 의원 발의) 20
1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윤영석 · 김석기 · 임이자 · 최교일 · 이
명수 · 이종배 · 윤한홍 · 김학용 · 박성중 · 염동열 · 이철규 의원 발의) 20
12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윤영석 · 김석기 · 임이자 · 최교
일 · 이명수 · 이종배 · 윤한홍 · 김학용 · 박성중 · 염동열 의원 발의) 21
1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윤영석 · 임이자 · 최교
일 · 이명수 · 이종배 · 윤한홍 · 김학용 · 박성중 · 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14) 21
126. 다문화교육 지원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태년 · 송갑석 · 김철민 · 고용진 · 조정식 ·
김병기 · 유은혜 · 조승래 · 소병훈 · 오영훈 · 한정애 · 윤영일 의원 발의) 21
1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태년 · 송갑석 · 김철민 · 고용진 · 조
정식 · 김병기 · 유은혜 · 조승래 · 소병훈 · 오영훈 · 한정애 · 윤영일 의원 발의) 21
1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
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21
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소병훈 · 김철민 ·
금태섭 · 장정숙 · 백혜련 · 조정식 · 윤소하 · 고용진 · 인재근 · 안민석 의원 발의) 21
1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송희경 · 임이자 · 신보라 · 金成
泰 · 이은권 · 최교일 · 이만희 · 서영교 · 박덕흠 의원 발의) 21
1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조정식 · 송갑석 · 민홍철 ·
원혜영 · 윤일규 · 정재호 · 유은혜 · 김영진 · 유동수 의원 발의) 21
1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강창일 · 금태
섭 · 민홍철 · 박정 · 백혜련 · 소병훈 · 신창현 · 안규백 · 유동수 · 윤후덕 · 이철희 의원 발의) 21
13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송갑석 · 김
철민 · 고용진 · 조정식 · 김병욱 · 유은혜 · 소병훈 · 오영훈 · 한정애 · 윤영일 · 노웅래 의원 발의) 21
1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정갑윤 · 정우택 · 이현재 · 윤영석 · 이
채익 · 유재중 · 김승희 · 이철규 · 김영우 의원 발의) 21
1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이찬열 · 백혜련 · 조정식 · 천정배 · 고
용진 · 유동수 · 진선미 · 인재근 · 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87) 21
1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 · 임이자 · 박덕흠 ·
정태욱 · 윤종필 · 문진국 · 민경욱 · 함진규 · 이종명 · 주광덕 의원 발의) 21
1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조정식 · 김병기 · 백혜련 · 송갑석 · 최
도자 · 이규희 · 김정우 · 임종성 · 박찬대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61) 21
13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윤후덕 · 이학재 · 유성엽 · 정유섭 · 안호영 · 김해영 · 조승래 · 권철승 · 오
제세 의원 발의) 21
1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유은혜 · 이상현 · 이후삼 · 노
웅래 · 박흥근 · 김해영 · 윤일규 · 백재현 · 서영교 · 신경민 · 김병욱 · 최인호 의원 발의) 21
1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유은혜 · 이상현 · 이후삼 · 노웅래 · 박
흥근 · 김해영 · 윤일규 · 백재현 · 서영교 · 신경민 · 김병욱 · 최인호 의원 발의) 21
1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김승희 · 추경
호 · 최연혜 · 이명수 · 경대수 · 윤영일 · 주광덕 · 박덕흠 · 성일중 의원 발의) 21
14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심기준 · 이인
영 · 송갑석 · 기동민 · 김정우 · 원혜영 · 신창현 · 송옥주 · 박주현 · 전현희 의원 발의) 21
1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백혜련 · 이찬열 · 윤일

규 · 기동민 · 손금주 · 서영교 · 김병기 · 박찬대 · 송옥주 의원 발의) 22

1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박정 · 송옥주 · 김해영 · 박영선 · 위성곤 · 윤후덕 · 김병기 · 제윤경 · 심재권 의원 발의) 22

1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이장우 · 김선동 · 이진복 · 홍일표 · 조훈현 · 김석기 · 엄용수 · 이종명 · 전희경 · 이명수 의원 발의) 22

14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조승래 · 조정식 · 백혜련 · 이규희 · 김정우 · 임종성 · 송갑석 · 서영교 · 박찬대 의원 발의) 22

147.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백재현 · 이동섭 · 김광수 · 권철승 · 유성엽 · 유동수 · 윤후덕 · 김삼화 의원 발의) 22

1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전해숙 · 김종희 · 조승래 · 김해영 · 박용진 · 신경민 · 박찬대 · 김삼화 · 서영교 · 박경미 · 임재훈 · 김병욱 의원 발의) 22

14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 · 박용진 · 백혜련 · 심상정 · 김정우 · 박경미 · 신경민 · 김해영 · 서영교 · 조승래 의원 발의) 22

15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김현권 · 윤일규 · 이상현 · 이찬열 · 이용득 · 박병석 · 안민석 · 오영훈 · 서영교 · 김해영 · 박찬대 · 박용진 · 신경민 의원 발의) 22

15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김현권 · 윤일규 · 이찬열 · 이용득 · 박병석 · 안민석 · 오영훈 · 서영교 · 김해영 · 박찬대 · 박용진 · 신경민 의원 발의) 22

1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22

1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22

1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대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갑석·송기현·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용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23

1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정태욱·박명재·김승희·정중섭·김재원·곽대훈·박덕흠·추경호·임이자 의원 발의) 23

156.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박경미·신창현·강훈식·박주민·유승희·원혜영·남인순·백혜련·신용현·김관영 의원 발의) 23

157. 2019년도 예산안 23
가. 교육부 소관

15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
가. 교육부 소관

159.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3
가. 교육부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불참한 증인을 고발한 후 교육부 소관 법안과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오전 차관회의 참석으로 오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이고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018 산학협력 엑스포 참석차 부산에 있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간사님들 다 연락 받으셨습니까?

1.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시 총 9인의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이 중 2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한 증인 이철수와 증인 정화순 등 2인의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고인에서 안 나오면 증인으로, 증인에서 안 나오면 이렇게 고발조치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이 점을 관계자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찬열 법안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155항 법률안은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1.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위원장 이찬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1항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정 법률안인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 협의가 되어 오늘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6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60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상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권한의 대부분이 이미 시행령을 통해 위임되고 있어 이를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접 소위에 회부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재개정에 관한 청원, 한국대학원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수학·과학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의 청원은 위원장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규환·권석창·안상수·김용태·김무성·김종석·전희경·경대수·유의동 의원 발의)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채이배·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전혜숙·양승조 의원 발의)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강석호·이명수·정운천·홍문표·김성태·김현아·장제원·박성중·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5581)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장석춘·문진국·김선동·김성원·정진석·원유철·유기준·윤상직·김진태·여상규 의원 발의)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승희·함진규·윤영석·나경원·한선교·인재근·심기준·이완영·강석진 의원 발의)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중 의원 대표발의)(홍문중·지상욱·권석창·임이자·이채익·김성원·박순자·이양수·김명연·문진국 의원 발의)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조훈현·이은재·나경원·한선교·김석기·홍문표·함진규·주호영·정진석 의원 발의)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김해영·이춘석·최인호·백혜련·이찬열·권철승·신경민·정재호·전혜숙·이학영·전현희 의원 발의)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홍문표·김승희·이우현·서청원·정갑윤·박명재·원유철·조훈현·김석기·김재경 의원 발의)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

표발의)(안민석·김민기·노웅래·이찬열·유은혜·전재수·박경미·김정우·심기준·윤영일 의원 발의)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민기·노웅래·이찬열·신창현·유은혜·전재수·추미애·박경미·심기준·윤영일 의원 발의)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민기·노웅래·이찬열·신창현·유은혜·전재수·추미애·김정우·심기준·윤영일 의원 발의)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삼화·손금주·이동섭·이용호·장정숙·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유은혜·신창현·안민석·김민기·김영호·전재수·추미애·노웅래·채이배·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62)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이현승·이채익·정갑윤·박찬우·김성찬·윤영석·김승희·김한표·박완수 의원 발의)
18.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이현승·이채익·정갑윤·박찬우·김성찬·윤영석·김승희·김한표·박완수 의원 발의)
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안민석·노웅래·김민기·남인순·원혜영·김부겸·전재수·김성수·윤소하·정춘숙·박남춘 의원 발의)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송옥주·윤관석·소병훈·노웅래·신창현·정성호·홍영표·김영호·정재호·어기구 의원 발의)
2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윤관석·소병훈·노웅래·신창현·정성호·홍영표·김영호·정재호·어기구 의원 발의)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

- 원 대표발의)(유기준·나경원·조경태·정유섭·이은권·이현승·이진복·金成泰·윤상현·권석창 의원 발의)
- 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황주홍·이찬열·고용진·김삼화·채이배·최도자·유동수·박준영·이용호·민홍철 의원 발의)
-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노웅래·윤영일·박찬대·정동영·박주현·최도자·천정배·유성엽 의원 발의)
-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유기준·신창현·박찬대·기동민·이해찬·김중로·유동수·민홍철·안규백·심기준·윤관석·김정우·정동영·소병훈·고용진·채이배 의원 발의)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김영호·신창현·정성호·윤관석·김정우·표창원·김성수·소병훈·노웅래·이해찬·채이배 의원 발의)
-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유기준·신창현·박찬대·기동민·이해찬·김중로·유동수·민홍철·안규백·심기준·윤관석·김정우·정동영·소병훈·고용진·채이배 의원 발의)
- 2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박정·김해영·오영훈·신창현·이찬열·박찬대·윤후덕·조승래·정성호·전재수·김종희·안민석 의원 발의)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송희경·김종석·박맹우·백승주·최운열·홍의락·유민봉·김성식·김석기·윤종필·전희경·박찬우·이종구 의원 발의)
-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김상훈·김명연·주광덕·김승희·송석준·김석기·박인숙·추경호·성일중·김순례·윤한홍 의원 발의)
-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문희상·윤후덕·인재근·소병훈·김종민·윤호중·이수혁·심재권·권철승·박정·홍영표 의원 발의)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상훈·김명연·강석진·이종명·추경호·윤재욱·한선교·김석기·윤영석·박맹우 의원 발의)
-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정우·김종대·남인순·민홍철·박찬대·신창현·심기준·안호영·윤관석·전재수·정성호·한정애 의원 발의)
-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박정·윤소하·박찬대·고용진·조승래·이원욱·백혜련·임종성·민병두·신경민·김성수·윤관석·박영선·노웅래·김삼화 의원 발의)
-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중·최연혜·김규환·이채익·장길부·유의동·윤영석·민경욱·박맹우 의원 발의)
- 3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유은혜·김병욱·오영훈·조승래·김민기·노웅래·이종걸·서형수·최인호 의원 발의)
-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유은혜·김병욱·오영훈·조승래·김민기·노웅래·이종걸·서형수·최인호 의원 발의)
- 3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윤호중·백혜련·변재일·정춘숙·이철희·윤관석·권미혁·박경미·서형수 의원 발의)
- 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지상욱·이동섭·김삼화·이찬열·이언주·김중로·권은희·오세정·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 4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개호·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이철희·오영훈·신창현·윤관석·이수혁·김종대·유동수·박정·

- 송옥주 · 심기준 · 유은혜 · 고용진 · 남인순 · 민홍철 의원 발의)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 · 권은희 · 김관영 · 김동철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도자 · 하태경 의원 발의)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신보라 · 김승희 · 김석기 · 이장우 · 엄용수 · 이진복 · 김한표 · 홍일표 · 조훈현 의원 발의)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백혜련 · 박용진 · 채이배 · 정춘숙 · 이종걸 · 최운열 · 이용득 · 임종성 · 윤후덕 · 강훈식 의원 발의)
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이종배 · 강석진 · 이명수 · 박성중 · 조경태 · 함진규 · 홍문중 · 원유철 · 유재중 의원 발의)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송희경 · 김종석 · 박맹우 · 유민봉 · 윤상직 · 황영철 · 김영우 · 주호영 · 이종구 의원 발의)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김철민 · 안규백 · 진선미 · 강창일 · 유승희 · 유은혜 · 백혜련 · 송희경 · 안민석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47)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김철민 · 안규백 · 진선미 · 강창일 · 유승희 · 유은혜 · 설훈 · 송희경 · 안민석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51)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송희경 · 이양수 · 박인숙 · 정태옥 · 이명수 · 나경원 · 김승희 · 이종배 · 조훈현 의원 발의)
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송기현 · 유은혜 · 김병욱 · 강창일 · 유동수 · 오영훈 · 정성호 · 이수혁 · 김종민 · 심기준 · 심재권 의원 발의)
51.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김부겸 · 유은혜 · 신창현 · 김병욱 · 전재수 · 정성호 · 고용진 · 조승래 · 노웅래 · 전해철 · 설훈 · 박주민 · 오영훈 의원 발의)
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한선교 · 함진규 · 김성원 · 홍문표 · 백승주 · 최연혜 · 조훈현 · 주광덕 · 정태옥 의원 발의)
5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유은혜 · 노웅래 · 안민석 · 정춘숙 · 이석현 · 김민기 · 전재수 · 조승래 · 김병욱 · 김상희 · 백혜련 · 윤관석 의원 발의)
5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5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5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5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두관 · 김철민 · 문희상 · 서영교 · 손혜원 · 신창현 · 원혜영 · 유승희 · 윤후덕 · 위성곤 · 이용득 · 전해철 · 진선미 의원 발의)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 · 강창일 · 김

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 6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 6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 6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 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승희·정동영·권석창·한선교·김세연·김성원·이명수·정진석·이종배 의원 발의)
- 6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현승·박덕흠·김재원·박맹우·곽대훈·이양수·이완영·임이자·신상진 의원 발의)
-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병욱·정춘숙·안호영·임종성·이원욱·표창원·윤관석·유은혜·김병기·김영호·김두관 의원 발의)
- 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병기·문희상·김병욱·박정·김현권·안호영·최인호·임종성·김경협·백혜련 의원 발의)
-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해영·권칠승·박정·전현희·이춘석·백혜련·윤관석·정재호 의원 발의)
- 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원유철·윤재옥·곽대훈·이종배·김상훈·정태옥·김재원·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
-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노웅래·이종배·윤종

필·김성원·김명연·유성엽·이종구·김세연·정양석 의원 발의)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황주홍·김한표·김삼화·유의동·김중로·이찬열·최도자·이동섭 의원 발의)
- 7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황주홍·김삼화·유의동·김중로·김규환·이찬열·최도자·이동섭 의원 발의)
-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유동수·오영훈·정성호·이수혁·심재권·송기현·표창원·전재수·손혜원 의원 발의)
-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조배숙·소병훈·주승용·이용득·윤영일·김민기·최도자·박주민·박홍근 의원 발의)
- 7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정춘숙·안규백·김성수·오영훈·노웅래·인재근·손혜원 의원 발의)
- 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정춘숙·안규백·김성수·오영훈·노웅래·인재근·손혜원·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10)
-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오세정·전희경·한선교·김석기·이철규·염동열·나경원·이은재·이종배·송희경·김정훈·조경태·이종명·박완수·정성호·박주민 의원 발의)
-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이정미·신경민·손금주·김영호·박주민·유은혜·금태섭·오영훈·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30)
-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기준·권석창·이명수·김성원·윤재옥·김석기·정태옥·김현아·강석진 의원 발의)
- 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심상정·노회찬·민홍철·김경진·강

- 병원·김현권 의원 발의)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진선미·이동섭·김경진·천정배·이개호·김광수·김중로·김종희 의원 발의)
8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한정애·강훈식·신창현·최도자·윤소하·추미애·양승조·금대섭·김영호 의원 발의)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김병욱·백혜련·윤후덕·이찬열·강훈식·박주민·문희상·박정·고용진·김경협·유동수 의원 발의)
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유동수·문희상·전현희·송기현·이동섭·박덕흠·김병관·주승용·위성곤·김철민·박정·설훈 의원 발의)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노웅래·신창현·오영훈·정성호·김영호·김경협·유은혜·소병훈·김민기·김병욱 의원 발의)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노웅래·신창현·오영훈·정성호·김영호·김경협·유은혜·소병훈·김민기·김병욱 의원 발의)
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서형수·이해찬·강훈식·정춘숙·윤소하·권미혁·원혜영·금대섭·강병원·조승래·채이배 의원 발의)
8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추경호·김상훈·정태욱·김재원·주호영·정갑윤·곽대훈·윤재욱·신보라 의원 발의)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승희·이찬열·강훈식·윤관석·안호영·강병원·임종성·김경협·윤후덕 의원 발의)
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김철민·정동영·김광수·최경환(평)·이찬열·김삼화·채이배·박주민·조배숙 의원 발의)
9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조배숙·주승용·윤영일·최도자·박홍근·유은혜·전재수·손혜원·설훈 의원 발의)
9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이동섭·고용진·민홍철·박정·유동수·유승희·김중로·신창현·김영호·박주민·원혜영·남인순·안민석 의원 발의)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윤후덕·김상희·유동수·전현희·윤소하·기동민·정춘숙·오제세·신창현·금대섭 의원 발의)
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금대섭·서영교·백혜련·정춘숙·이학영·윤영일·진선미·김상희·박병석·이재정·윤호중 의원 발의)
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조승래·유동수·김상희·표창원·노웅래·김경협·전재수·진선미·안민석·오영훈·고용진·김병욱·금대섭·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67)
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규백·윤후덕·이동섭·신창현·정춘숙·송옥주·권미혁·진선미·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68)
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규백·윤후덕·이동섭·신창현·정춘숙·송옥주·권미혁·진선미·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69)
9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규백·윤후덕·이동섭·신창현·정춘숙·송옥주·권미혁·진선미·윤관석 의원 발의)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이찬열·이언주·김중로·최도자·김삼화·강훈식·설훈·황주홍·손혜원 의원 발의)
1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이양수·경대수·김승희·권석창·송희경·곽대훈·여상규·김성찬·김규환 의원 발의)
10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중희·김경진·정인화·이동섭·김광수·장정숙·천정배·안상수·손금주·이찬열 의원 발의)
1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안민석·유동수·안규백·신창현·윤후덕·박정·윤관석·한정애·이재정·송석준 의원 발의)
10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이동섭·김경진·손금주·윤관석·김광수·천정배·박주현·이용호 의원 발의)
1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윤영일·정진석·이명수·황영철·안상수·박덕흠·박성중·정갑윤·김명연 의원 발의)
10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정춘숙·송기현·권미혁·이찬열·박정·이수혁·박선숙·안호영·황주홍 의원 발의)
10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정병국·조배숙·유승민·박덕흠·윤종필·김세연·지상욱·하태경·이동섭·유동수·김삼화 의원 발의)
1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병욱·노웅래·김민기·전재수·김병기·안민석·오영훈·유은혜·설훈 의원 발의)
1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이채익·김정재·추경호·김규환·정유섭·유민봉·최연혜·정진석·이철규 의원 발의)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박주현·전혜숙·황주홍·김광수·안호영·박선숙·김경진·설훈·유성엽·정동영 의원 발의)
1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명수·이종배·박덕흠·김기선·정태욱·김성찬·김중로·이종명·신보라 의원 발의)
1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강훈식·김성수·박정·송옥주·심재권·박주민·전혜숙·유동수·이학영 의원 발의)
1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이재정·강훈식·윤후덕·남인순·신창현·박주민·송옥주·강병원·송기현 의원 발의)
1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권미혁·김병기·김철민·송옥주·심재권·안민석·윤후덕·이수혁·제윤경 의원 발의)
1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김현아·김경진·이동섭·신용현·김삼화·김승희·최도자·채이배·오신환 의원 발의)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안민석·이석현·김병욱·유은혜·인재근·조승래·이개호·노웅래·강창일 의원 발의)
1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안민석·이석현·김병욱·유은혜·인재근·조승래·이개호·노웅래·강창일 의원 발의)
11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안민석·이석현·김병욱·유은혜·인재근·조승래·이개호·노웅래·강창일 의원 발의)
1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추경호·임이자·문진국·김기선·정갑윤·박성중·김석기·원유철·최연혜 의원 발의)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권칠승·이찬열·유성엽·김경진·천정배·조배숙·김중로·윤영일·임종성 의원 발의)
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권칠승·이찬열·유성엽·김경진·천정배·조배숙·김중로·윤영일·임종성 의원 발의)
1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강훈식·권미혁·김병기·김영호·문희상·안민석·유동수·이동섭·진선미 의원 발의)
1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박주선·김삼화·정성호·김광수·이용호·이연주·신용현·오신환·김수민 의원 발의)
1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

표발의)(이은재·윤영석·김석기·임이자·최교일·이명수·이종배·윤한홍·김학용·박성중·염동열·이철규 의원 발의)

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윤영석·김석기·임이자·최교일·이명수·이종배·윤한홍·김학용·박성중·염동열 의원 발의)
1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윤영석·임이자·최교일·이명수·이종배·윤한홍·김학용·박성중·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14)
126. 다문화교육 지원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태년·송갑석·김철민·고용진·조정식·김병기·유은혜·조승래·소병훈·오영훈·한정애·윤영일 의원 발의)
1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태년·송갑석·김철민·고용진·조정식·김병기·유은혜·조승래·소병훈·오영훈·한정애·윤영일 의원 발의)
1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김해영·박재호·안호영·전재수·윤준호·박광온·권칠승·백혜련·김상희·우원식 의원 발의)
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소병훈·김철민·금태섭·장정숙·백혜련·조정식·윤소하·고용진·인재근·안민석 의원 발의)
1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송희경·임이자·신보라·金成泰·이은권·최교일·이만희·서영교·박덕흠 의원 발의)
1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조정식·송갑석·민홍철·원혜영·윤일규·정재호·유은혜·김영진·유동수 의원 발의)
1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강창일·금태섭·민홍철·박정·백혜련·소병훈·신창현·안규백·유동수·윤후덕·이철희 의원 발의)
13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송갑석·김철민·고용진·조정식·김병욱·유은혜·소병훈·오영훈·한정애·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

1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정갑윤·정우택·이현재·윤영석·이채익·유재중·김승희·이철규·김영우 의원 발의)
1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이찬열·백혜련·조정식·천정배·고용진·유동수·진선미·인재근·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87)
1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임이자·박덕흠·정태욱·윤종필·문진국·민경욱·함진규·이종명·주광덕 의원 발의)
1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조정식·김병기·백혜련·송갑석·최도자·이규희·김정우·임종성·박찬대·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61)
13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윤후덕·이학재·유성엽·정유섭·안호영·김해영·조승래·권칠승·오제세 의원 발의)
1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유은혜·이상현·이후삼·노웅래·박홍근·김해영·윤일규·백재현·서영교·신경민·김병욱·최인호 의원 발의)
1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유은혜·이상현·이후삼·노웅래·박홍근·김해영·윤일규·백재현·서영교·신경민·김병욱·최인호 의원 발의)
1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김승희·추경호·최연혜·이명수·경대수·윤영일·주광덕·박덕흠·성일종 의원 발의)
14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심기준·이인영·송갑석·기동민·김정우·

원혜영 · 신창현 · 송옥주 · 박주현 · 전현희 의원 발의)

1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백혜련 · 이찬열 · 윤일규 · 기동민 · 손금주 · 서영교 · 김병기 · 박찬대 · 송옥주 의원 발의)

1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박정 · 송옥주 · 김해영 · 박영선 · 위성곤 · 윤후덕 · 김병기 · 제윤경 · 심재권 의원 발의)

1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이장우 · 김선동 · 이진복 · 홍일표 · 조훈현 · 김석기 · 엄용수 · 이종명 · 전희경 · 이명수 의원 발의)

14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조승래 · 조정식 · 백혜련 · 이규희 · 김정우 · 임종성 · 송갑석 · 서영교 · 박찬대 의원 발의)

147.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백재현 · 이동섭 · 김광수 · 권칠승 · 유성엽 · 유동수 · 윤후덕 · 김삼화 의원 발의)

1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전해숙 · 김종희 · 조승래 · 김해영 · 박용진 · 신경민 · 박찬대 · 김삼화 · 서영교 · 박경미 · 임재훈 · 김병욱 의원 발의)

14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 · 박용진 · 백혜련 · 심상정 · 김정우 · 박경미 · 신경민 · 김해영 · 서영교 · 조승래 의원 발의)

15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김현권 · 윤일규 · 이상현 · 이찬열 · 이용득 · 박병석 · 안민석 · 오영훈 · 서영교 · 김해영 · 박찬대 · 박용진 · 신경민 의원 발의)

15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김현권 · 윤일규 · 이찬열 · 이용득 · 박병석 · 안민석 · 오영훈 · 서영교 · 김해영 · 박찬대 · 박용진 · 신경민 의원 발의)

1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

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은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운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용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1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은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운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희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1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정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희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1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정태욱 · 박명재 · 김승희 · 정종섭 · 김재원 · 곽대훈 · 박덕흠 · 추경호 · 임이자 의원 발의)

156.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박경미 · 신창현 · 강훈식 · 박주민 · 유승희 · 원혜영 · 남인순 · 백혜련 · 신용현 · 김관영 의원 발의)

157. 2019년도 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

15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부 소관

159.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

(10시18분)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2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9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까지 총 15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발의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의한 3개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향후 있을 11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이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유치원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고 이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매년 약 2조 원 규모의 공적재원을 보조금과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공립유치원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특별히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018억 8905만 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혹여나 금전적인 문제나 기타 어려움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

도록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고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책정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간 사립유치원은 교육자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별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사익추구 행태에 국민들께서는 경악하고 분노하셨습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썼다는 점에서 그 분노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 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고 그 대안의 결과물이 바로 이번에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유아교육법을 통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금으로 지급되어 설립자나 원장이 마음대로 교비를 사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 있을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했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통해서도 교육 목적 외 교비를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학교법인형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의 겸임을 금지시켜 셀프징계 논란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설립자의 이행의무를 마련했으며 미이행 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학교급식법 범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포함했습니다.

저는 이 3개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법적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로 비위를 저질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

고 있습니다.

당리당락이나 정치적 고려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있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3개 법안을 원안 가결시켜서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소명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와 교육위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학부모님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찬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특별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항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님, 정부 제출 법률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부 소관 법률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법률안 제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를 담은 교육분야 법률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회가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 직무

정지·해임명령 등 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운영 실적이 없어서 유명무실했던 국사편찬위원회 내부에 두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공교육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부담 경감, 대학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 후학습 여건의 조성 및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4쪽,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518억 원 증액된 5조 90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6조 8106억 원이 증액된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보다 6조 648억 원 증액된 59조 8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3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 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559억 원을, 그리고 창의교육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인재 육성 등 학교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2024억 원이 증액된 55조 7431억 원을 편성했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원아 수 감소에 따라서 1487억 원이 감액된 3조 7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3920억 원이 증액된 9조 95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 지원, 산학협력 고도화,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에 금년보다 2461억 원이 증액된 1조 42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연구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문사회 기초연구,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연구윤리활동 지원 등에 87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학생들도 보다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에 3조 99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713억 원이 증액된 74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에 1361억 원을 편성하고 국제교육 협력증진을 위해서 재외동포 교육 운영지원, 글로벌 교육교류사업 등에 1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전문대학 혁신지원,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지원 등에 40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육일반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소속기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 지원에 12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 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교육급여 예산을 13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공적연금 부문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지급을 포함하여 4조 4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학진흥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340억 원 감액된 52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4329억 원 증액된 12조 1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소관 법률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말씀드린 법률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률안 및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에 성심껏 임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전별 검토보고서는 단말기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따라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현 위원일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 내 주요 행사 및 각종 회의 참석 등 수시로 학교에 출입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와의 접촉 차단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바,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추구하는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라 하겠습니다. 제56조 제1항에 대하여 현재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의 참여와 같이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범행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의 일률적 제한을 적용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의 결여,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 모순 등은 개정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2월에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문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시 해당 내용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 또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상한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별도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행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법률 간 상충되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청법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에 따라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정책숙려제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하려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교육부 내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정책숙려제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정책숙려제는 특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심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일종의 정책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기본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

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책숙려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각 실·국별 기본경비 예산 수요를 추계하는 데 큰 불확실성을 남기게 되며, 일반용역비 또는 일종의 정책 연구로 보아 연구용역비로 보는 경우를 모두 살펴보면 실·국별 기본경비 내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는 각각 평균 8000여만원, 4000여만원인데 정책숙려제 제1호 사업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사례와 같이 약 1억 5000만 원을 정책숙려제 비용으로 집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정책기획관실의 기본경비를 내역 변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용역비가 가장 많은 정책기획관의 경우에도 일반용역비가 2억 3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그 절반 이상을 내역 변경할 수도 있게 되므로 과도한 수준의 내역 변경이 우려됩니다.

정책숙려제가 지속적으로 매년 여러 건 시행될 예정이라면 이를 정책 사안별로 담당 실·국 기본경비에서 분산하여 집행하는 것은 그에 따른 성과관리 및 예산통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숙려제의 특성상 예산추계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책연구개발사업도 각 실·국 기본경비 내 정책연구비로 집행 가능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별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미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정책숙려제의 경우도 현재와 같은 방식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이 사업의 통계성 정보 제공은 크게 EDS와 EDSS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DS가 교육부, 교육청 내부에서만 활용 가능한 데이터인 데 반해 EDSS는 EDS 중 외부 학술연구자에게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대국민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DSS를 통하여 학술연구자가 에듀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구축한 EDSS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자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교육부의 연구계획서 심의를 거친 후 EDSS를 통하여 데이터를 제공받게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초 자료 요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5일 내외이며 최근 3개년 자료 요청 대비 승인율은 100%라고 합니다.

EDSS 사이트에는 자료 요청을 통하여 제공하는 에듀데이터 이외에 공개용 에듀데이터가 있는데 이는 EDSS의 에듀데이터 제공 목록 중 정보공시 대상 정보인 학교정보공시, 교육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 수요가 많았던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바로 에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EDSS 접속 건수 및 제공 건수, 공개용 에듀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를 보면 접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하여 제공 건수는 2017년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공개용 에듀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DSS와 유사한 데이터 공개사이트인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 이미 다양한 공공데이터 31만 건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티맵(T map), 서울시 버스정보 등처럼 민간에서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EDSS 자료 요청 승인율이 100%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공개에 문제가 없는 승인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용 에듀데이터로 제공하는 등 공개용 에듀데이터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15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홍문종 위원께서는 미국 출장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이찬열** 김한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한표 위원** 예, 그동안 저희 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또 흐르는 정서를 감안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 왔는데 그간 자진해서

일산에 있는 유관기관 내에 있는 개인 사무실도 이전했었고 또 최근에 발생한 사립유치원 문제, 예산 및 법안 처리 등 현안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 다소 저희들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오늘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평무사하게 교육현안 문제를 잘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직까지 식지 않은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들을 교육현안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잘 해소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장관을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 박춘란 차관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파행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자연스럽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경위가 어쨌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우리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쌓여 있는 유치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속도감 있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황금색 넥타이를 매고 싶더라고요. 매고 왔더니, 하여튼 김한표 간사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구요.

대의에서 우리 교육의 목표는 다 똑같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교육부와 우리 교육위원회가 뿔뿔 뭉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다 같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7분으로 하십니까?

○조승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찬열 지금 저 위원장도 없는데 간사님들끼리 7분으로 하자고 약속을 하셨나 본데 7분을 꼭 굳이 지키시지 않으셔도 이것 법안하고

예산안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관련해서는 예산소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소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안소위원님들은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안계실 것 같은데……

우선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저는 자료 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교외근로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학교와 협약을 맺은 사업체나 기관에 가서 학생들이 일을 하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보면 매년 1000억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급이 되었고 내년해보니까 한 1500억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 선정을 대학과 교수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업체인지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 나타나서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소위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안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에 경북 김천에서 규모 2.5 지진이 있었는데, 작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포항 지진 때문에? 이것 좀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장 안전성이랄지 부처 협업대책이랄지 행동요령 교육이랄지 그런 것을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지난주에 이미 종합 점검 대책은 발표한 바 있고요. 제가 어제 포항에도 다녀오면서 당일 날 혹시라도 그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나 또 훈련계획까지 해서 지금 적극적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기억을 하실 것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지금 교육부에다가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영 이해가 안 됩니다.

시험지 유출만 해도 하여튼 작년에 두 번, 올해 하반기에 아홉 번 이런데 거의 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아예 학종이 본안으로 들어가면, 비교과로 들어가면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인데, 아무리 보도를 하고 지적을 해도 교육부나 하여튼 교육부 관련 기관들이 조용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사 가지고 읽었는데, 2017년 EBS에서 나간 것이 2018년 초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학종은,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도저히 학종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전 세계에 학종으로 대학생을 뽑는 경우도 없었고요, 그 흔하게 하는 관련 회의 자체도 안 하고요,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며칠 전에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기반 중심의 학생평가 및 기록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딱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수임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수능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문제나 시간이나 배점 정도만 하는데 이게 무슨 침묵하라는 함구령, 개그 오더(gag order)가 있는 겁니까? 학종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저도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서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신경민 위원** 잠깐만요, 2022년으로 자꾸 그러는데 2022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학종에 대해서 계속 찬송가만 부릅니다. 이 공교육 개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대학도 얘기를 하고 교육부도 얘기하고 교육청도 얘기하고 다 그래요. 똑같이 입을 모은 듯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이게 한 30여 개국이고 여기가 대부분 선진국들인데 이렇게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갖다 주면 다 웃습니다. 이게 웃음거리가 된 것이고요.

이 정도 되면 한 10년 계획을 하든 8년 계획을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어 있고. 며칠 전에 계약한 것도 내용을 좀 주세요, 누구하고 어떻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기재 방법 바꾸고 수상 경력 좀 바꾸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학종을 근본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대입 전형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를 긴 호흡으로, 그 긴 호흡이라는 것은 정권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과 포스트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포스트 포스트 정권에서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단순히 학종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신경민 위원** 그렇지요, 대입전형 전체의 문제이고 공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좀 합의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전부 찬송가만 불러 가지고는…… 찬송가 부르는 데 잘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찬송가류인데 스쿨 미투, 지금 스쿨 미투 가지고 이번 국감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나왔어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스승의 은혜를 개사해 가지고 ‘스승의 성희롱이 너무 많아서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지난 9월에 인천 인성여고 사례도 있고요. 또 경남의 중학교 교사는 고려인 3·4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것도 있고, 이것은 바로 엇그제 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도 하겠다, 하겠다 하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부총리시니까 이것 전부 다 모아 놓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여가부의 협조를 거부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신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가부 협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특히 학교하고 교수 그리고 종교 쪽의 그루밍 성추행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은 없지만 이것 꼭 얘기 해야 되는데, 역대 정권들이 교사들의 행정업무 감소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 대선공약으로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지요.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도 확충하고 관련 있습니다. 일반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우리 아이 종합평가를 제대로 써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은 또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예산을 하시든지 그래서 스쿨 미투도 그렇고 확충도 그렇고 교사 행정업무 감소도 그렇고 새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계속 하겠다는 것하고 찬송가하고 이런 것은 좀 그만하시고요. 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의 아주 오래된 뷰로크라시(bureaucracy)이고요, 교육부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래, 대학을 졸업한 이래 교육부를 출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육부는 이대로 가면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폐지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스쿨 미투는 날 텐데 학교는 쉬쉬하고, 밖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특별장학도 못 하게 하고, 특별장학과 봐야 학교 안에서 하라고 그리고, 여기에도 개그 오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개그 오더가 있는 거예요. 이십전심으로 해서 확충이건 스쿨 미투건 교사 행정업무건 간에 다 개그 오더가 있고 그냥 지나가자, 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임기 할 동안 지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신청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잠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중장기적인 교육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국가교육회의 이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게 되는 데서 좀 더 깊이 있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포함한 대안들을 좀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현장 방문을 여가부장관과 법무부장관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 내에 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안을 받았고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적인, 스쿨 미투를 포함한 미투 운동 확산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경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스쿨 미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것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께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12년부터 17년까지 만족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도 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다는 현장의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교육부 내에서도 당장에 신속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중장기적인 근본적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장관님, 우리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학부모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이게 지금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현안이 아닐지라도 국가적으로 우리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시행이 되면서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에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그것 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올해 18%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에는 30%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이런 지역인재 채용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게 그 지역의 인재를 채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그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이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당연한 논리적 선상에서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법도 발의는 했는데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적립금 관련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법률에 의무화하면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지금까지는 총액 중심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 계획, 운용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더 법률로써 공시하도록 하면……

○**김해영 위원** 누적 적립금 현황을 좀 상세하게 법률로써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요 현재 기 적립금을 1000억 원 이상 보유한 대학이 한 20곳인데요 해당 20개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이 17%인데 전국의 사립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이 36%로 지금 이런 적립금을 1000억 이상 보유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데 적립금의 사용 가능한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실제로 이렇게 기숙사와 관련해서 적립금의 목적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영 위원** 청년주거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우리 대학에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기숙사 신·증축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화학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사행행위 영업장 이러한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그런데요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배출시설은 설치금지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포함되어 있

지 않습니다.

○**김해영 위원** 실제로 2016년에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정문에서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이 포함된 공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집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시설이 학교 근처에 설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런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의 그 법안 발의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해당 장치들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그렇게 되면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부처하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법안 발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이게 과도한 범위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희경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전희경 위원님은 참고로 법안소위 예산소위에 다 들어가 계시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먼저 오늘 교육부에서 이 자료,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 후 관련 현황점검 결과 보고 자료 이렇게 내놓으신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의원들 책상

에 올려 놓아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방과후수업을 해 달라고 하는 현장의 요청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의원 입법안들이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이던 현재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도 그리고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하셨던 차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부의 입장이 그때하고는 달리 장관·차관 두 분 다 방과후수업 이렇게 10월 달에 한 번씩 조사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당시에 법안소위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해서 금지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경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었구요.

그때 당시에 법안소위 위원장이셨던 유은혜 장관께서는 방과후수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영어를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방과후수업을 안 해도 3학년 때부터 배워도 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차관께서는 제가 현장 수요가, 이게 방과후수업을 열어 달라는 요청이……

여기에 똑같이 써 있어요. 그때도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저학년들이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나 맞벌이 가정의 보육적 기능도 이 방과 후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빨리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6월까지만 평가를 해 보자, 9월까지만 평가를 해 보자라고 할 때 차관께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평가할 게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가 되니까 장관 바뀌니까 아, 이것 영어 관련해서 조사·점검 결과, 이것 점검 10월 한 달에 해서 이렇게 결론 내실 것을 그러면 그동안 왜 그 법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분이 암암리에 막고 적극적으로 막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세요.

또 있습니다. 유치원 놀이중심 영어 방과 후 허용 발표, 2018년 10월 4일 날 장관 임명되시고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방과후수업이 초등학교에서 못 하나까 역으로 이제는 ‘유치원에서는 그러면 하는데 초등학교만 못 하나?’라고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금지하자’라는 촌극을 이 정부에서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현장에서 반발을 하나까 이것은 1년 유예했다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년 유예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기로 했었지요?

유은혜 장관님, 뭐하기로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희경 위원 예, 정책숙려제로 결정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정책숙려제, 예.
○전희경 위원 정책숙려 하셨어요? 정책숙려를 하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정책숙려 하지 않았습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현장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의 요청 그대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현장의 수요를 교육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이 정부의 철학이 있어서 유치원 영어수업의, 영어 조기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들 하셨잖아요,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철학대로 정책숙려를 하시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을 받으시든지 하셔야지, 장관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은 또 숙려제 안 하고 유치원 영어는 이제 허용한다?

이게 장관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영어교육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들쭉날쭉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지난번 법안 심사 때도 현장의 요구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감안했습니다.

다만 공교육 정상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법안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요, 유치원 방과 후 영어는 제

가 장관 지명되기 전에도 이미 현장의 요구나 수요조사들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숙려제를 하지 않아도 현장 수용성을 반영해서 이것은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교육부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교육 정상화법이 일몰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이 법을 빨리 현실 요구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불발되고 그리고 유치원 현장이 이렇게 영어교육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정부의 말 한마디에 현장은 어마어마하게 출렁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사교육 시장들도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장관 바뀌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혼선을 빚은 데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의원들 책상에 이런 몇 장짜리 페이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러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알고 있던 것 이렇게 몇 장으로 정리해 놓고 어물쩍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유치원 영어수업은 숙려제 안 가고 지금 허용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결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유치원 영어는 이미 지금도 하고 있었었고요, 금지된 상태가 아니어서 놀이 중심의……

○전희경 위원 그리고 차관님, 차관님은 이제 법안소위 들어오시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입장에서 바뀌신 거예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교육?

○교육부차관 박춘란 금방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미 3월 22일인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3월이었었고요. 3월 1일부터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서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 방과 후 영어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희경 위원 그래서 2학기 때라도 할 수 있게 빨리 법 개정하자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부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어쨌든 법 개정 의해서, 지금 일단 일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동안에 학교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판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참 편의적이신데요. 이거 이렇게 몇 장짜리…… 이거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하셔야 됩니다, 영어교육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 후에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초등학교 방과 후 1·2학년 영어도 학부모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고 또 이게 금지한 이후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교육 정상화 법의 개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결정할 일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법안에 올라와 있는 공교육 정상화 법 개정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실 부분이라, 오늘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은 이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위원장 이찬열** 지금 장관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점검 결과에 보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금지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 평가가 높지 않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긍정적 평가가 높지 않은데 일몰을 연장하자? 1·2학년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하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 그러니까 금지에 대해서 평가가 높지 않다는 거지요. 영어 방과 후……

○**위원장 이찬열** 차라리 영어로 쓰는 게 낫겠다, 영어로.

○**조승래 위원** 어렵게 쓰긴 했어요.

○**위원장 이찬열**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님은 참고로 법안소위에 계세요.

○**박경미 위원** 예.

장관님, 취업사에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강조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서 이루어 지는데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정보교과인데 현재는 중1, 고1까지만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아직 정보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컴퓨터실 확보, 노후 컴퓨터 교체 필요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통합과 학과 별도로 과학탐구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지요. 학교 현장에서 하도 실험을 안 하니까 탐구실험을 별도 과목으로 편제표에 넣은 건데요. 그러니까 과학실험실의 정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요즘 핫한 게 메이커 스페이스, 팸랩인데요. 창작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과학·수학 정보 융합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창의융합형 과학실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년 전에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교육부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2017년도 예산에. 그런데 요청을 해서 25억이 확보되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25억으로 동결이 돼서 아쉬웠었는데요. 2019년은 거기서 더 후퇴해서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액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지요. 그동안 대학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단순화돼서 일반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폐합된 거 다시 한번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율개선 대학 120개교에는 45억씩 그리고 역량강화 대학에는 12개교에 지금 19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는 저는 대학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120개교 중에서 사립대학 95개교의 교비회계 수입을 보니까 평균이

1685억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45억은 수입 총액의 2.7%에 불과하거든요.

사립대학들이 반값등록금 등으로 재정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부처로부터의 지원은 대학별로 굉장히 차이가 커서 부익부 빈익빈 그런 상태인데요. 저는 교육부가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그 차이를 보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투자 비율이 현재 36.1%인데 OECD 평균은 66%, 훨씬 못 미치는 거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부가 기재부와 협상하기 전에 편성했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훨씬 컸는데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그때는 자율개선 대학 120개교에 56억씩 그다음에 역량강화 대학은 23억 5000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깎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노력하실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는 더 적극 노력할 생각이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저는 교육부가 좀 더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데요. 국정과제 52번이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인데 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요구하셨던, 기재부에 보냈던 안 그 정도로는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대학의 책무성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도 성과관리 모니터링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부총리님도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최근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시잖아

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박경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기재부에서 공영형 사립대 예산 812억 전액 삭감했다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갖고 계신 것인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는 공영형 사립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800억 예산이 올라가니까, 예타가 500억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된 채로 올라왔다 해서 기재부 예산편성에서……

○박경미 위원 예타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으로, 전체가 아니라 몇 개 대학, 한 2~3개 대학을 선정해서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고요. 그 예산으로 이번에 9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예, 그렇게라도 시작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한 또 다른 사업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이에요. 민주시민교육, 그 중요성은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거랑도 다 관련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보면 영국은 시티즌십(citizenship)이라는 그런 과목이 2002년부터 국가교육과정에 있었어요. 미국은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지요. 그런데 시빅스(civics)라고 하는 과목을 대부분의 주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독일은 1970년대부터 그다음에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독립 과목은 아니지만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이신데 우리 위원장께서 여기에 법안소위라고 이렇게 써 놔 계시네요.

○김현아 위원 차관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김현아 위원 종종 당황하셨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김현아 위원 종종 당황하셨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김현아 위원 오늘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유은혜 장관님, 정말 잘 하십시오. 제발 잘 하십시오. 제 당부가 아니고요,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바람이고 절규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장관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의원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대충 시간 때우시다가 내년에 총선 나가신다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게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저도 청문회 때보다 더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청문회에서 장관님에게 계속 실망한 부분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수다, 아니면 변명,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셔서 그 자리만 모면하시려고 하는 상황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모든 위원들이 지금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공약도 저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0년 뒤는 맞을 수 있는데 당장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맞지만 100년 뒤를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을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사회부총리로 앉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 공약이라도 틀리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바꾸라고 중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변명과 그냥 두루뭉술하게 현상만 모면하시려고 하는 것에 되게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넘어서 대통령의 공약도 수정·보완하고 이게 이슈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일을 하시는 게 장관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 당부입니다. 그거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수 증가로 인해서 재정교부금이 한 6조 50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보니까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자체가 늘어나서 교육예산이 단순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2019년 예산이 교육부로서는 굉장히 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동안 예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적정 가격을 지불하지 못했던 교육 관련 지원을 정상화해 주시는 것에 주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상교육 항목을 늘어난 교부금 갖고 자꾸만 하는 것보다는 교육환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안전 관련된 투자에 교육부가 늘어난 세수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국감에서도 석면이라든가 내진, 학교 노후시설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 시·도교육청에 배분되고 나면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건데 항목별로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석면 같은 경우 2027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마다 공약으로 갖고 계신 분, 안 갖고 계신 분, 즉 신경을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 너무 차별이 심해요.

교육부가 하실 거는 뭐냐 하면 교육청마다 너무 불균형한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점검

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진 근처대에 있는데 예산을 그만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에 ‘너희는 왜 이렇게 못 하나?’라고 지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동의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래서 그거 꼭 지적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대학생 기숙사 관련인데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기숙사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땅 찾기도 쉽지가 않고 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지만 이게 건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제안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장학재단에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학자금 지원 범위 안에 숙박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광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기숙사나 이런 쪽, 주거비 관련 지원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약간 변경해서 대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또 전세나 월세 등 해서 여러 가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1인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이 친구들은 월세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증금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있으면 지하방에서 창문이 있는 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나중에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장학재단에서 다시 회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대충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금 더 했을 때, 한 1만 명 정도 지원했을 때 500억 정도가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러니까 기숙사가 아니라 임대할 수 있도록……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주변에 방 한 칸 빌리는 데 보증금을, 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보증금을 대신 빌려 주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단기간에 기숙사와 관련된 청년 대학생 주거 문제를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들지 않고 해서 저는 이걸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강학교나 교남학교 폭행사건 때문에 특수학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

다. 그리고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일반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 세우기 너무 어렵고 안에 병설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립대학 안에 유휴부지들이 남는 데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리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특수학생들이 단거리에서 지원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국립대 안에 시설을 잘 갖춰서 멀리라도 와서 이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립대학 내에 부설 특수학교 설립해서 장애 학생들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시고 체계적인 교육인프라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국립대학 내에 특수학교 신설하는 게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하고 공주대에 각각 전국 단위의 모집이 가능한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하고요. 그 부분 예산, 이번에 설계비 해서 28억 원을 저희가 증액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특수학교는 저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장학재단 관련해서 기숙사, 그러니까 주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방안은 제가 장학재단하고 가능한지 여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혹시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군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승래 그러면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군현 위원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내년에 1000개 학급 신설을 즉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2019년의 국공립 확충 예산 규모로 5000억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추가로 500학급 신증설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군현 위원** 5000억을 발표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5000억이 반영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저희 교부금에서 편성하는……
 ○**이군현 위원** 교부금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고교 무상교육처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또……
 ○**이군현 위원** 아니, 무상교육도 지금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겠다는 거, 법 개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군현 위원** 교부율을 높이기…… 지금 얼마인데요,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20.27%인데요.
 ○**이군현 위원** 17대 때 십구점몇 프로로 돼 있던 것을 개정안을 올려 가지고 했는데 개정하려면 뭘니까, 행자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파이가 적기 때문에 심하게 반대할 텐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러니까 기재부 하고는 협의를 필요한데요, 이번에 국세·지방세가 조정되면서……
 ○**이군현 위원** 기재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면 교육 쪽에서 돈을 더 가져가니까, 다른 정부부처에서 파이가 줄어드니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1%, 영점몇 프로 바꾸기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차관님 잘 아실 텐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물론 그렇습니다만 교육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교부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군현 위원** 아니, 교육위에 있는 위원뿐만 아니고 박춘란 차관께서 잘 아시잖아요, 겪어 보셔서. 17·18·19대를 오면서 조금 영점몇 프로씩 올렸는데 우리가 교육에서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면 다른 정부부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고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차관?

○**교육부차관 박춘란** 기재부 쪽하고 일단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군현 위원** 물론 당연히 협의해야지. 예산은 전부 기재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것 올려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쉬운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어떻게 확보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중요한 것은 5000억이라는 국공립 확충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 이 말이야,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한 거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내년도에 500학급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역 단위로 숫자나 교사 확충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500학급을 더 신증설 하겠다고 해서 5000억 원을 편성해 냈는데……
 ○**이군현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산출한 근거가 전부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단설유치원으로 하느냐 병설유치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설유치원 하려면 돈이 훨씬 더 드는 거지, 병설하고 다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산출된 건지 그 예산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를 저희 의원실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산출 근거가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게 첫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제 질의 내용은 파악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이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II유형 장학금사업 취지에 대해서 이 사업 취지하고 잘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II유형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청년층이 몇 프로나 지원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청년층이 지금 한 69% 정도로.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70%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청년층한테 일자리 주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무나 신청하면 주겠다는 취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부분은 청년층 우선이지요.

○이군현 위원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목적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9% 넘게 1900…… 약 2000명 정도, 1987명이나 2000명 가까이 신청했는데 사업 취지에 맞는 건가요,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게 이번에 처음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군현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안 줄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러면 50세 이상이 청년이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인력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매치하려고 한 건데 좀 미스매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군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2018년 대비해서 내년엔 얼마 증액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내년 예산은 578억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한 280억, 300억 가까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청년 고용창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량적 지표가 확인되고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청년들의 참여율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게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신설된 예산이어서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당장 제시하기에는 기간이

나 여러 가지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이면 청년에 맞게 해야지 50대 이상인 사람 8000명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 잘 맞지 않는다 이 말이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군현 위원 보완을 해야지, 이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 지금 반영 안 됐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기재부에서 판단할 때 그것이 사립대학을 공영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자기 산하기관 거 취합해 가지고 기재부에 내면 기재부에서 1심·2심·3심을 거쳐서 심의를 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오는 건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관계되는 국가의 모든 예산은 최종 판단을 기재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립대학 공영제는 유치원 문제하고 또 다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다릅니다.

○이군현 위원 아동이나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을 하는 거하고 대학하고는 다른 거지요. 대학을 내가 계속…… 전임 장관 누구신가, 김상곤 장관이었나요? 그 양반 할 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학을 공영제로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반대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생각은 똑같아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칠팔십 프로가 거의 사립대학인데 이것을 공영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이 예산 공영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기재부에서 예산

을 삭감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타를 생략한 채로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군현 위원 예타가 생략되었더라도, 예타가 B/C가 있지만 또 AHP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적 판단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저도 예결위원장을 해 봤잖아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정책적 판단, 기재부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그렇게 썩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 거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좀 더 사업의 구체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군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사립대학 공영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사립대학을 그렇게 공영제 해 가지고 거기다 공영이사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에 예산 얼마 주면서 교육부가,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대학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 있다고 많은 사립대학들이 보는 거예요. 국립대학하고 다른 거예요, 국립대학 공영제 하는 거하고.

사립대학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야. 10여명에서 15명 정도 사립대학의 이사들이 있잖아요. 그 한 명 공영제 이사 그것도 ‘원하는 데 집어넣어 주겠다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냐’ 하지만 그 한 명이 얼마든지 사립대학이사회에서의 정책 방향을, 사립대학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

옛날 영화에, 이건 사담이지만 ‘더 파워 오브 워’이라고,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청년, 소년이 아프리카 전체 국가를 바꾸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지만.

○위원장대리 조승래 이군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그것처럼 누가 거기 들어 있는냐에 따라서 사립대학 이사들이 눈치 봐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국립대학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이군현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의 설립취지나 사립대학의 그런 운영에 반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 사립대학에……

○이군현 위원 그게 반한다 이 말이에요, 자체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 원하는 사립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나 또 특수성을 반영한……

○이군현 위원 사립 거점대학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걸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조승래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원하는 사립대학 중심으로……

○이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시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한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래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사실 사립대학교의 건학이념, 그다음에 설립자라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영형 사립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군현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죽 이렇게 교육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립재단의 비리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실질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주체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의 비리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조치를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거점대학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걷어 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그것이 바로 공영형 사립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광양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의 교비 횡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학교가 폐쇄되거나 정원이 감축되거나 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는, 그럴 때는 대학 운영, 사립대학의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거점대학의 지위도 유지시킬 수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한, 건학이념을 무시한, 다양성을 무시한 그런 일방적 공영형 사립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동의를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AI·자동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제 곧 시작이 되지요. 저도 SNS를 통해 가지고,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노후라든가 일자리 문제,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선 고졸 취업을 도와주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일선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 제도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 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 대학생 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대학생 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업계고

취업자에 대한 장려금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터 지킴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요, 저는 취업지원관을 말씀을 드렸고요……

○박찬대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지금 학교폭력예방법 20조에 배치 근거규정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나 학교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나 근로계약의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88%가 자원봉사 인력의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볼 때는, 교육청 학교 단위로 배움터 지킴이를 위한 업무지침이 있고 또 별도의 교육연수를 받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근로자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근로자인데 자원봉사 인력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특히 일선에서는 근로자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이미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교사라든가 교도관과 같은 공무원 출신들이 자리를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움터 지킴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묵인·방조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산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전국에 1만 2000명이 넘는데 이 중에 1만 1000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통계에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움터 지킴이를 단적

으로 제시를 했는데 또 그 밖에 유치원 돌봄교실 보조교사도 근로계약 없이 2, 3개월짜리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도 좀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가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일자리는 시장이 만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 분야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 분야 곳곳에 숨어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교육부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타 부처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배움터 지킴이, 또 다른 말로는 학교보안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포함해서 제도개선이 어떻게 가능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예, 그리고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새로운 대입정책이 발표되면 온 나라가 들끓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무래도 대입이 이후의 진로나 평생의 직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사실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결국 취업시장 입문 경쟁의 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입정책이 바뀌면 결국 대학 가는 것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직장을 가느냐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대학에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입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대학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

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졸업 전에 사실상 취업을 하는 형태로 현장실습 제도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취업지원관 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학생들의 취업처를 발굴하고 산학협력, 행정 지원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3년짜리 한시적 사업이 되고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또 인력 운용도 불안정하지요. 취업 시즌에만 3, 4개월만 고용되는 형태가 지금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는 누적되지 못하고 다 사장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교육청 단 2명만이 도내 학생 전체의 취업을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 두 명이. 취업지원관을 포함해 가지고 각 지역의 취업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양질의 취업처가 발굴되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놓고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떠한 입시제도를 내놓아도 사실은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고졸 취업자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포용국가라고 하는 우리 정부 국정철학에도 맞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장관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에 전

적으로 동의하고요. 대학이 아니더라도 고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취업 후학습 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너무 대학으로만 집중되는 교육정책,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유은혜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저희들이 입수하지 못한 자료를 이번에 국회사무처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한 게 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6년도 1월 6일 자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의원실에서 (주)서울프로아트—서울프로아트는 아시지요?—에 의정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습시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깐 2016년 1월 6일 날 의정보고서 제작 때문에 2400여만 원을 프로아트에 지급했고 이 중에 국회사무처에서 532만 원을 아마 의원실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선거인쇄비로 2016년 5월 10일 날 2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게 저희들에게 확인됐고 장관 남편께서 서울프로아트에서 2015년 12월 달에 120만 원, 2016년 1월 달부터 3월까지 360만 원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문회 때 이때 당시에 장관께서 답변한 게 ‘남편은 다른 잡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서 그 영업의 결과로 받은 수당이다’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광상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의정보고서 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이 돈들이 오고 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명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프로아트하고는 저희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왔던 업체고요……

○광상도 위원 아니요, 이 돈이 간 것에 대해서

결론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프로아트하고 오래 거래했다는 것은 저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 남편이 다른 잡지로 인쇄소의 영업수당으로 받은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인쇄라고 하는 게 계약을 하면 당장 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지 그다음에 영업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전에 다른 잡지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인쇄 거래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당을 그 시기에 받은 거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저희 사무실 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광상도 위원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의정보고서 성향이나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지 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 국회사무처에서는 그때 이미 다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그 당시에 국회사무처 공문도 있습니다, 제출 못 한다고 하는 공문도. 그런데 그 당시부터 만약에 그렇게 떳떳했으면 이 자료 다 내놓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 자료 그때 당시에는 다 거부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미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고요, 국회사무처에서 저희에게는……

○광상도 위원 아니요, 자료 제출을 왜 거부를 하시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료 제출을 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 국회사무처에서 이미 의원님 실로 자료를 다 보내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상도 위원 자료를 받지 못한 공문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 결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못 받아서 질의를 못 한 겁니다.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차관, 2021년까지 유치원 취원 아동 수가 60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곽상도 위원** 답변이 좀 저거 하면 뒤에 누가 말씀 좀 드리세요. 유치원과장 누가 있잖아요.

6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지난번에 그때까지 국공립 취학 비율을 40%에 맞춘다고 하니깐 2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600학급 정도가 그때까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하고 정부에서 국공립을 확대해 버리면 2021년까지 사립유치원은 얼마 정도 도태될 것으로 보십니까?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늘려 가고 학생 수는 줄고 이렇게 가면 사립유치원이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자동으로 문 닫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 국장입니다.

저희가 추산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시다만 매년.....

○**곽상도 위원** 아니, 그것 추산을 안 하고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밀고 갑니까? 유치원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추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유치원.....

○**곽상도 위원** 이것 추산해 내실 거지요?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금해서.....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예.

○**곽상도 위원** 학생 수가, 그다음 해에 유치원 아동 수는 더 줄어서 한 56만 명, 4만 명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금년에 애들이 워낙 출생률이 낮아서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은 어느 정도 문을 닫아야 되는지, 정부가 대략 수급을 보고 계획을 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공립을 막 늘려 가면 유치원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대략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알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 감사원이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한 것 관련해서 감사원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더니 감사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개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부 들고 있는 얘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똑같은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며칠 전에 예산심사 때도 정부가 뭔가 통일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안전부·법제처 등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가지고 분명한 것을 좀 정리정돈을 해 주세요. 이게 어린이집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곽상도 위원** 보건복지부도 똑같은 문제가 곧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건지, 정부 방침은 공영성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을 이용해서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구조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어린이집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린이집 외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요양원이라든가 개인 재산을 이용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만 유독 지금 타깃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사실은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시잖아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교육부차관,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거다.....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유은혜 장관님, 이번에 교육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6조 이상……

○서영교 위원 6조 7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10.5% 정도 늘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제가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냈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전 학년 다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서영교 위원 하면 얼마, 단계적으로 하면 얼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삼사천억 정도 필요하고요……

○서영교 위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삼사천억 정도면 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이 없는 대한민국도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이 돈은 오롯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지출 통장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 국가 예산은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을 최대한 국민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도 모두 다 좋아하는 내용이 고교 무상교육으로 예산이 돌아가야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내년에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약 3000억 내지 4000억 필요한데 이번에 교육부 예산은 6조 7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정교부금에서도 또한 그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향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모두 다 고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든 야든. 선거용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무슨 선거용이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논리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저도 오늘 기재부 만나기로 했거든요. 걱정했고 입장을 정했으면 저는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야가 없이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치밀하게 저희들도 같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의 노력은, 국가가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돌려 드리는 게 맞지요. 과거에는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권력자들이 나누어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공부 잘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구, 공부 잘하는 사람 말고도 충분히 이 사회의 귀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운영위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국회사무처에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서 주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나와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사무처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것이 아직 재판 중인 일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내부 정보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관련해서, 유은혜 장관 관련 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그래서 낼 수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이유는 그것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항소하지 않겠다, 항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국회운영위에서 어제 체크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것은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당연하지요. 국회사무처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유은혜 장관 관련 것도 요구를 했을 텐데 그 전체 국회사무처 관련한 정보 공개 관련한 재판 건이었습니다, 유은혜

장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회사무처가 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예산 관련해서 교육부가 예산의 고등교육 부문은 1, 예산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들어 주세요.

고등교육 부문에 ‘1.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 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1번에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 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지방에 상주캠퍼스가 있었어요. 상주대학이 있었어요.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하고 통합이 되면서 상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나아지겠다, 상주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아지겠다, 거점 국립대학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희망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캠퍼스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생수가 오히려 1152명에서 73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과는 줄었습니다. 주변은 공동화되었습니다.

상주캠퍼스만 이럴까요? 저에게 상주캠퍼스 관련해서 질의하시러 오신 분들이 ‘의원님,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초 통합할 때 경북대는 노인병원 분원 설치와 부속농업교육센터를 상주캠퍼스로 이전하겠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겠다, 조류생태환경연구소를 이전하겠다, 생물생태자원분관을 설립하겠다, 동물병원을 신축하겠다, 생태관광농업창업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지역 중심 국립대를 특화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도 지켜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셔야지요. 상주캠퍼스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거점 국립대학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대학들은 어떻게 되며, 그 지역은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말한 곳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이게 벌써 10년이 된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교육부는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희망이 싹틀 수 있게 실질적으로 약속한 것을 추진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 체크하셔서……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하고 돕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지역 대학들은 전부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학생 수도 급감하고 지역은 죽어 가고 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현장 상황을 더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대로 못 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이제 유은혜 장관을 중심으로 새로 거듭나야 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그런 교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시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무상교육에서 무상 시리즈가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이 용어 좀 고칠 수 없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김한표 위원 저는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이렇게 고쳐 부르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공공급식이요?

○김한표 위원 예, 공공급식. 그러니까 밥을 공짜로 얻어먹거나 또 그렇게 먹는 것이 우리 아이들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마치 공짜배기 얻어먹는다, 꼭 옛날에 우리가 원조받을 때 줄서 가지고 우유 배급 타 먹고 옥수수·강냉이 배급 타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의 생각들이 떠올라서요.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 가지고 하는 교육이고 세금 가지고 다 하지, 하늘에서 폭 떨어져 가지

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좀 자존심 있게 한번 새로운 용어를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것은……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실지로 이런 용어 쓰니까, 외국에? OECD라든지 다른 나라에 이런 용어 쓰면서 무상교육이라고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글썄요, 그 용어는 제가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의 가계 부담을 덜고 없앤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그런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래서 무상이라는 자체가 무상이 아닌데, 다 내잖아요. 누가 내든 국민이 내든 또 국가에서 내든 간에 다 내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저는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웅당 국가에서 능력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따른 용어도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일부 지역에서 교육부 추진과 무관하게 또—저는 편하게 공공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공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준이 좀 틀리더라고요. 교육부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보니까 거기다가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체육복 값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좀 들쭉날쭉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꼭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건 아니면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건 배우는 커 가는 아이들한테는 균형과 또 형평을 좀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부분은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좀 권장해서, 예를 들면 경남에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안 느끼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김한표 위원 그런 것은 권고해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기준을 한번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은 기재부하고 잘 상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도 계속 상의 중입니다. 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게 아까 이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세·지방세가 조정이 되면서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그런 논의를 포함해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문제도 논의 중입니다.

○김한표 위원 돈이 남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당당하게 ‘이 정도 수준의 국가는 이 정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게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전 상의도 없고 그냥 불쑥 이렇게 발표해 놓으니까 이런 혼란이 이렇게 오게 되면 교육계 전반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발표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그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했었으면 그 뉴스를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도도 하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할 텐데 이것은 뭐, 발표해 놓고 또 뒤에 문제인 정부의 한 기관에서는 찬성, 한 기관에서는 추진, 한 기관에서는 상의한 바 없다 하니까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그러나 이게 제가 장관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냥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논의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의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김한표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을 말씀하시겠지만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육 문제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할 때 시범

지역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특히 명분은 경제가 어려운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산, 아니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등 해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그래서 실업률이 최고도로 높은 그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복 문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동·하복 하나까 30만 원 정도 학부형들이 부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해도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착용해야 되는 옷이라고 하는 교복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교복 사업 이 부분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면 먼저 시범지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확산시키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교복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종합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한표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한 가지 남았는데요 시간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 때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갖는 충격도 컸고요.

오늘 다행히 관련된 법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법안소위로 이제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관련 법이 신속하게 논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이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된 것을 통해서 국민

들과 학부모들을 좀 안심시키는 조치들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과 원장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치원 관련 3법이 통과가 되면 유치원을 뺏긴다. 사적 재산을 강탈당한다. 그리고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불펜 한 자루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조승래 위원 이것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가짜 뉴스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또 해 주시고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교육자적인 양심과 헌신성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다수 교육자들에게는 사기가 또 진작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조치를 또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고등교육법이 통과가 되면서 대학평의회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고 5월 29일인가요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부에서는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39개 국립대 중에서는 3개 대학에 지금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8개 공립대에서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국립대도 교대에서만 세 군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주 대구 춘천. 그러니까 주요한 거점 국립대학들은 한 군데도 없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있는 공립대

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원들 간에 참여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합의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고등교육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했던 것은 어쨌든 국공립대 내부에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준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런데 이 민주적 거버넌스가 자리를 잡아야 국공립대의 자율성도 저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지 않고 자율성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만 주장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교육부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좀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영어 조기교육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어교육을 포함한 외국어 교육이지요, 어느 시점에 외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계에서도 전문가들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모국어를 습득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인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영어와 관련해서는 그 공교육 내에서 어떻게 잘 내실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우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쨌든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외국어에 무방비 상태로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선행

학습이라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대적으로 낡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국어교육의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교육부 내부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외국어가 영어니까 영어교육의 소위 목표와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영어 등 외국어교육이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험문제 풀이에 더, 과도하게 학습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앞으로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목표로 외국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과로 편성되어 있는 교과 과정에 대한 목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학습이라는 것은 교과 과정 외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외국어교육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재설정해 주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한번 세부적인 단계별 학습목표들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저도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훈 위원 임재훈입니다.

장관님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먼저 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예산안이 어쨌든 일반회계 면에서도 10% 감소되어 있고.

다음 표 한번 봐 주시면, 최근 5년간 예산 현황도 보면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재훈 위원** 다음 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은 정부 의지의 반영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독도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감 때도 지적해주셨듯이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독도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의지의 반영의 결과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고가 되어야 국격도 좀 제고가 되고 국민총화도 되고, 우리 정체성도 좀 강화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장관께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여기 표 앞에 보시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처 협의하셔서 대폭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더 추가 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기재부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기억나시지요?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대폭 증액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재훈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표 한번 또 봐 주십시오.

저것 설명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내년도 예산안 보면 역시 14.7%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시면 석면 제거를 하다가 석면텍스, 저도 정확히 성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4% 정도 검출이 되었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저것을 아이들이 마시기라도 했다거나 건드렸다가는…… 사실 독극물 아닙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석면제거공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거 현장이 저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석면제거공사를

하면서 저런 일들이 생겨서 저희도 공사 업체에 대해서 석면 해체·제거 기준을 좀,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지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좀 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훈 위원** 또 하나, 석면제거공사를 해야 될 학교가 한 1만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지진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곳이 한 2만 2000개 딱 2배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되거나 석면공사부터 먼저 해 버리게 되면 아이들 안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겹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겹친다든가 또 공사 기간이 주로 방학 때 해야 되는 것이라서 속도는 또 지연될 우려가 커서 그런 시기와 아이들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그래서 공사할 때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문제 때문에 방학 때 주로 공사하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교육감님들과 협의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저게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어느 중학교의 석면제거공사 현장인데, 아찔합니다. 저것 아이들이 모르고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재훈 위원** 라돈과 함께 독극물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재훈 위원** 세 번째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정책숙려제 예산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재훈 위원**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재훈 위원** 없는데, 보니까 올해 3월에 숙려제 정책 3건이 선정이 되었어요. 저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일반용역비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정책기획관 기본경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사실상 이대로 한다면 1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볼 때는 유명무실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내년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를 4억 5000만 원 증액은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전에 정책숙려제 과제를 선정해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도 이 예산 편성을 정책숙려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신다든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 국회의 예산심사권도 나름대로 존중받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용역비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시려면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정책숙려제를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예상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또 예산심의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재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종훈 이사장님 계십니까, 지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예.

○**임재훈 위원**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딱 한 가지만 여쭙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주에 본사가 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예, 나주로 이전했습니다.

○**임재훈 위원** 물론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마는 교육 여건이 사실 썩 좋지는 않아서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직원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특히 유아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지금 저희 젊은 직원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출산이나 결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직원들이 이직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임재훈 위원** 그런 예로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성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두 번째,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여기 서울 사옥 재건축하시잖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훈 위원** 완공이 되면 임대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저희가 한 8.5%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재훈 위원** 그러면 평균 이상입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물론 평균 이상입니다. 보통 평균 한 4%, 5%이기 때문이에요. 한 8.5%면 상당히 높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훈 위원** 요즘에는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런지 여의도가 상당히 공실률이 높아요. 물론 몇 년 뒤에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손실이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하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고, 사실 간사님들하고 협의는 주질의로 끝내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전희경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희경 위원 국감 때 입시관리 못지않게 학사관리 중요하다는 게 일부 학교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해서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국립대 21곳에서 동일 학과에 부모가 교수로 또 그 자녀가 학생으로 소속되어 있는 게 총 111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같은 과에 엄마, 아빠 그 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1월 7일 기준으로 9개 국립대학을 좀 상세하게 살펴봤더니 26쌍의 사례가 나왔고 이중에서 자녀가 부모 수업을 들은 경우가 18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를 보니까 올 A+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학교와 그 학생 상황은 띄우지를 않겠습니다.

물론 해당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학생의 능력과 관심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차 지적을 했듯이 학사관리, 그 개인 교수에 의해서 출제와 평가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100개 대학을 쪽 뽑아 보니까 관련 규정 미비, 학사관리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런 경우 학사관리를 좀 별도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국공립대부터 시작해서 사립대까지 학사관리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을 기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리고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문제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사립, 사학이 담당해 오던 우리 교육의 중추적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느냐? 동반자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정책의 큰 흐름이 사립과 사학이라는 것을 자연도태 내지는 인공도태를 시키고 이것을 전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립

대학 육성사업에 있어서 예산 추이를 보면 2017년 같은 경우에 205억에서, 작년도에 수립된 올해 예산이지요, 800억으로…… 누구보다도 유은혜 장관께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1000억으로 하려다가 800억으로 예산이 삭감됐지만 어쨌든 205억대에서 80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게 1500억이네요, 국립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국립대, 사립대 비교를 해 봐도 이렇게 국립대에 정부가 재원을 쏟아 붓고 또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금 동결, 입학금 전면 폐지하라는 압력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학기금 같은 경우에도 대학 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손발이 전부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국공립유치원들을 확충하겠다, 지금 2600개 학급으로 늘리겠다, 500개씩 늘려 나가겠다 하고 있는데 여기 교원 수급이랑 학급 개설, 더더군다나 단설로 유치원을 늘리겠다 했을 때 이거 연금이랑 시설투자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사립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냥 어떤 개별 케이스 1건, 2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 몇 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인 정부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 사립이 차지하고 있던 교육에 있어서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솔직한 비전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관하고 이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투입되는 실질 비용, 그것이 공무원 수 증가와 그에 따른 연금 증가분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에서 사립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여해 왔던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향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공립에 더 지원하고 확충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 충족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리 국공립 유

치원·어린이집 확대해도 취원을 40%까지 끌어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60%의 아이들은 사립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돼서 파트너십을 갖고 또 사립대학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늘리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의 우선순위나 또 국가의 책임성이라는 면에서 국공립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희경 위원 이게 공공성, 국가의 책임을 자꾸 교육에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절대선의 입장으로 들리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사립이 한다라는 그런 어떤 도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국공립은 정말 필요 최저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는 선에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창의와 혁신이 일어나고 건학의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사학이 담당을 하고 그것이 사립의 존립 이유이자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공립으로, 국가가 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그 부분을 챙겨서 예산심사 때 그것을 놓고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강사법 때문에 각 대학에서 어려운 점도 호소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야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시간강사법이 어차피 1월 1일부터 시행

이 되게 되어 있는데 대학 측에서는 벌써 감원 얘기가 나오고 또 대형 강의하고 또 전임교수, 초빙교수들 강의시간 늘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졸업 이수 학점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지금까지 돈에 맞춰서 교육을 했습니까?

교육은 만날 백년지대계라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서 온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아탑이라고 그러는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학생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을 대학 측에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상아탑입니까? 돈타पी지, 돈탑.

어떻게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온 대학도 있고 그동안 7, 8년 동안 저는 지식착취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강사들의 지식을 착취한 사람들이 대학당국 아니에요? 강사 쓴 사람들, 시간강사.

그러면 2011년도에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까지 유예가 되면서 가장 덕 본 사람은 대학들이라고, 대학들. 피해 본 사람들은 결국은 강사고. 이게 강사만 피해 본 것이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용 당한 것도 같은데 정말 대학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도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비협조적인 대학을 발골을 해서 갖고, 현재 강사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고 시간 흐르면서 어느 대학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은 독도 예산을 다 잘랐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른 겁니까, 독도 예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다 자른 것은 아니고요, 조금 감액됐는데……

○위원장 이찬열 감액을 누가 시켰냐고요?

그 사람 일본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일본 가서 살라고. 독도 갈 자격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뭘 얼마나 많이 예산을 요구를 했기에 잘리냐고요.

누구인지 나중에 이름 좀 조용히 가르쳐 주세요, 일본 비자 받아다 줄 테니까.

그러면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등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 중 법률안과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김현아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이찬열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몇 번씩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곽상도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이군현	이찬열	임재훈
전희경	조승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채수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 장관	유은혜
차관	박춘란
기획조정실장	김영철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
대변인	임창빈
사회정책협력관	이난영
정책기획관	김태훈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대학학술정책관	심민철

직업교육정책관	김영곤
학교혁신정책관	최은희
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학생지원국장	정인순
평생미래교육국장	최은옥
교육안전정보국장	류정섭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	김현국
국사편찬위원장	조은광
국립특수교육원장	김배성
중앙교육연수원장	배성근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성민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성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박이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이지병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